

해외건설 전문 관리자인력 양성사업 위탁에 관한 협약서

국토해양부(이하 “갑”)와 해외건설협회(이하 “을”)는 해외건설 부문의 전문 관리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해외건설 전문 관리자 인력 양성사업을 “을”에게 위탁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과정개설 및 운영) ① “을”은 해외건설 분야의 전문 관리자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취업, 전직·전환 2개로 나누어 운영한다.

② 취업과정의 경우 신규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, 전직·전환과정의 경우 해외무역 등 해외업무 경험자 및 건설현장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해외건설 관련 기본교육과 실무교육을 실시한다.

③ 교육인원은 연 300명 이상으로 하며, 각 과정의 교육인원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④ “을”은 “갑” 또는 “갑”이 정하는 자가 요구하는 교육현장 실태점검, 교육생 확보현황 및 취업현황, 사업추진실적, 사업비 사용실적 등 동 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청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⑤ 주간과정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 (운영계획의 수립 및 이행) ① “을”은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운영계획(이하 “운영계획”)을 수립한다.

1. 예산집행·운영에 관한 사항

2. 실무위주의 교과과정 개발

3. 교수진 확보 및 운영계획

4. 교육생 선발 및 취업지원계획

② “을”은 본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“갑”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승인받은 운영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④ “을”의 운영성과 및 협약이행이 미흡한 경우 지원 감축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4조 (“갑”의 지원) “갑”은 동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며, 해외 건설 인력양성 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한다.

제5조 (유관기관과의 협력) “을”은 해외건설 전문 관리자인력 양성사업의 운영과 교육생의 취업을 위해 대학 및 국내·외 해외건설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한다.

제6조 (우수교수진 확보) “을”은 해외건설 분야의 전문가를 우수한 교수진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감 있는 실무교육 실시를 위하여 업계전문가를 70%이상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.

제7조 (예산의 관리) ① 해외건설 전문 관리자인력 양성사업의 회계는 기존 교육과정과 구분하여 “을”의 회계 내에서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.

② 국고보조금은 본 협약이 규정한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8조 (예산결산 및 정산) ① “을”은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동 사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“갑”은 필요시 결산서 내용에 대하여 검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검증내용이 문제가 있을 경우 공인회계사의 재검증을 받도록 “을”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④ 교육과정 운영 후 남은 잔액은 국고로 반납한다.

제9조 (협약의 기간) 이 사업은 제8조에 의거한 결산 및 정산이 완료된 때를 사업의 종료시점으로 한다.

제10조 (협약의 변경 및 해지) ① “갑”은 “을”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,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② “갑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“을”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

2. “을”의 협약의 위반이 중대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한 경우

3. 동 사업 평가결과 “을”이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“을”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

5. “갑”이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

③ 제1항에 의거 본 협약을 해지할 경우 “갑”은 미리 “을”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의거하여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,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제11조 (“을”의 의무) “을”은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, 해외건설 전문 관리자인력 양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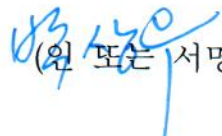
제12조 (기타사항) ① 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여 정한다.


②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관련법령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.

③ 본 협약서 내용에 대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의 해석이 다르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“갑”의 해석에 따른다.

④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09년 2월 9일

(갑)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 (인 또는 서명)

(을) 해외건설협회장  (인 또는 서명)